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56 발의연월일: 2025. 2. 26.

발 의 자:김용민·강준현·김영호

김남희 • 박지원 • 추미애

민형배 · 노종면 · 주철현

박민규 • 한준호 • 서영석

이성윤 · 임미애 · 장경태

김용만 • 민병덕 • 김주영

문정복・양부남・황운하

김현정 • 박균택 의원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검찰총장만 할 수 있게 되어있어, 국민에게 봉사하기보다는 검찰총장 중심의 조직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검사가 잘못하여도 검찰총장이 징계심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검사를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없게 되어있어,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제1항),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안 제7조제5항), 법무부장관이 징계심의를 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안 제5조제6항)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법률 제 호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위원장이 부득이한"을 "위원장이 징계를 청구하거나부득이한"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검찰총장"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징계청구자"라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2항 중 "검찰총장은"을 "징계청구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법무부장관
- 2. 검찰총장
- ⑤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제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제1항 중 "검찰총장이"를 "징계청구자가"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찰총장("을 "징계청구자("로, ")은"을 ")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총장("을 "징계청구자("로, "은"을 "는"으로 한다.

제7조의4제2항 중 "경우 검찰총장"을 "경우 징계청구자"로, "은"을

"는"으로 한다.

제17조의2 중 "검찰총장("을 "징계청구자("로, "은"을 "는"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검찰총장은"을 "징계청구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 ⑤ (생 략)	임기 등) ① ~ ⑤ (현행과 같
	음)
⑥ <u>위원장이 부득이한</u> 사유로	⑥ 위원장이 징계를 청구하거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u>나 부득이한</u>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	
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위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
원회의 징계심의는 <u>검찰총장</u> 의	<u>다음 각 호의</u>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사람(이하 "징계청구자"라 한
	<u>다)</u>
<u><신 설></u>	<u>1. 법무부장관</u>
<u><신 설></u>	<u>2. 검찰총장</u>
② <u>검찰총장은</u> 검사가 제2조	② <u>징계청구자는</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	
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	
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조에 따라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거나 법무부장관이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그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조의3(재징계 등의 청구) ① 7 <u>검찰총장(</u>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 부장관을 말한다)은 다음 각

⑤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제2조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
는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
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징계부가금) ①
<u></u> 징계청구자가
<u>.</u>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3(재징계 등의 청구) ①
<u> 징계청구자(</u>
)
<u>/ L</u>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등 처분의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경우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받은 감봉·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 3. (생략)
- ② 검찰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징계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 제7조의4(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저 사유 확인 등)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검찰총

1. ~ 3. (현행과 같음)
② <u>징계청구자(</u>
<u>L</u>
<u>.</u>
세7조의4(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현행과 같
<u>수</u>)
②
<u>경우 징계청</u>

<u>장</u>(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생략)

- 제17조의2(징계청구의 취하) <u>검찰</u> 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징계청구 이후에 제2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청구를 제1 8조에 따른 징계의결 전까지취하할 수 있다.
- 제18조(징계의결) ① ~ ③ (생략)
 - ④ <u>검찰총장은</u>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에 앞서 위원회에 의 견을 제시할 수 있다.

<u> 구자</u>
<u>-</u>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징계청구의 취하) <u>징계</u>
<u>청구자(</u>
<u>L</u>
제18조(징계의결)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u>징계청구자는</u>